

#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24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1. 14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5. 11. 14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5. 11. 26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주민생활과장 정영량)

#### 가. 개정이유

나라를 위해 희생·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,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등 규정 삭제를 통해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1)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액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수량 삭제

(안 제5조제1항)

2)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, 수량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군수가 정함

(안 제5조제2항 신설)

#### 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, 제19조

2) 예산조치: 2026년 당초예산 편성예정

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4484(2025. 9. 5.)호]

4) 기 타

- 가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1413호
  - 예고기간: 2025. 9. 1.~2025. 9. 22.(21일간)
  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마) 비용추계서: 붙임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#### ○ 개정 목적

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, 조례에 명시한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급액과 지원 수량 표기를 삭제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

#### 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5조제1항) 제1호의 보훈명예수당, 제2호의 사망위로금, 제3호의 보훈 격려금의 각각 지원액(숫자)과 제4호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량(숫자) 및 단위를 삭제하고
- (안 제5조제2항)을 신설하여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원액, 수량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#### ○ 종합검토 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시책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지원액, 지원 수량과 단위를 모두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1. 2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